

■ 한국전자인증(주) 인증서비스 이용약관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 및 적용 범위)

본 약관은 전자서명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(이하 "전자서명관련법"이라 한다)과 한국전자인증주식회사(이하 "한국전자인증"이라 한다)의 인증업무준칙에 의하여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

-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"전자서명생성정보"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.
- "전자서명검증정보"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.
- "인증"이라 함은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"인증서"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.
- "등록대행기관"이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으로부터 인증서비스 가입신청서의 접수/처리 및 신원확인 등 가입자 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.
- "가입자"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.
- "이용자"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전자서명검증정보의 합치성을 확인하려는 자를 말한다.
- "가입자 정보"라 함은 가입자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/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가입자를 알아볼 수 있는 부호/문자/음성/음향/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(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가입자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- 사고정보: 전자금융사고 또는 공동인증서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의 기기정보 및 개인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)를 말한다.

제 3 조 (약관 명시 및 개정)

- 본 약관은 인증서비스 가입 신청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- 한국전자인증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 일자 2 주전에 이를 고지한다. 단,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 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고지한다.
-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이 고지된 후 2 주 이내(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30 일 이내)에 서면 또는 전화, 전자메일의 수단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- 본 약관의 공지는 한국전자인증 웹사이트(<https://www.crosscert.com>)홈페이지상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, 약관 변경의 고지는 전단과 동일한 방법 또는 전자메일의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.

제 4 조 (약관 외의 규정)
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서명관련법 및 전자상거래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.

제 2 장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

제 5 조(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인증수수료)

-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서의 신규발급, 재발급, 갱신발급, 효력정지, 효력회복 및 폐지 등의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.
- 한국전자인증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종류와 용도, 인증수수료 등은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(<https://www.crosscert.com>)에 게시한다.
- 제 5 조 2 항의 인증수수료는 인증서비스 가입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한국전자인증이 무료발급을 명시하거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.

제 6 조(인증서비스 가입신청)

- 인증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(이하 "가입신청자"라 한다)는 한국전자인증 또는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서비스 신청서(이하 "신청서"라 한다)와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전항의 신청을 받은 한국전자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,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.
 -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
 -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
 - 제출된 서류만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 - 납부할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-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하였거나 사고정보로 의심되는 경우
 - 기타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공동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
- 한국전자인증과 등록대행기관은 전자서명관련법에 근거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 및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후 인증서 발급코드를 제공한다.
- 가입신청자는 인증서 발급 안내를 숙지하여 인증서를 신청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한국전자인증의 웹사이트(<https://www.crosscert.com>)에 접속하여 인증서 발급코드를 입력 후 인증서를 발급받는다.
- 가입신청자가 가입신청 후 인증서 발급가능기간 내에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서 발급가능기간의 초과와 동시에 인증서 서비스 가입신청이 취소된다.

제 7 조 (인증수수료의 환불)

- 가입신청자가 인증서를 발급가능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급가능기간만료일로부터 14 일 이내, 인증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원래 발급신청을 하였던 한국전자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발급의 취소를 신청하고, 인증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.

- 전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, 한국전자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발급신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인증서의 효력 등

제 8 조 (인증서의 유효기간)

-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(<https://www.crosscert.com>)에 게시한다.

제 9 조 (인증서의 이용범위)

- 한국전자인증은 개인과 법인/단체/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인증서를 발행하며, 공동인증서의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.
 - 법인/단체/개인사업자(범용): 일반 전자상거래, 금융기관 업무, 정부전자조달/민원업무, 국제청 전자세금계산서/민원업무
 - 법인/단체/개인사업자(용도제한용): 전자계약 업무, 전자세금계산서 업무, 은행, 보험 및 신용카드 업무, 원산지 증명 업무, 조달 비축물자 업무
 - 개인(범용): 일반 전자상거래, 금융기관 업무, 정부 민원업무
 - 개인(용도제한용): 은행, 보험 및 신용카드 업무, 정부 민원업무, EMR 전자서명 업무, 내부 업무용
 - 서버(범용): 온라인상 서버를 통해 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업무

제 10 조 (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)

-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효력이 소멸된다.
 -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
 - 본 약관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
 - 본 약관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

제 11 조 (인증서의 효력정지 등)

-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효력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,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다.
 -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는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인증서 효력회복 신청이 있으면 그 효력을 회복한다.
 - 한국전자인증은 제 1 항,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효력을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[ldap://dir.crosscert.com](http://dir.crosscert.com) 에 이를 공지한다.

제 12 조 (인증서의 폐지 등)

- 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인증서를 폐지한다.
 -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
 - 가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
 - 가입자의 인증서가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발급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
 - 가입자의 사망/실종신고 또는 해산사실을 인지한 경우
 -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/훼손 또는 도난/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
 -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에 대한 효력회복신청이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없는 경우
 - 한국전자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출된 경우
- 한국전자인증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[ldap://dir.crosscert.com](http://dir.crosscert.com) 에 이를 공지한다.

제 13 조 (인증서비스의 정지 및 인증서의 이용제한 등)

- 한국전자인증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는 연중 무휴 1 일 24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.
 - 서비스용 설비 점검, 보수 또는 공사 등의 필요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
 -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
 -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상의 이유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
 - 전자서명관련법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13 조 1 항에 따라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 한국전자인증은 지체 없이 가입자에게 이를 고지한다.
- 한국전자인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서 이용을 일부 혹은 전부 제한할 수 있다.
 - 가입자의 사망, 실종,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전자거래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
 -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가입한 경우
 - 법인가입자가 사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,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
 -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
 - 전자서명관련법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한국전자인증이 인지한 경우
 - 가입자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
 - 한국전자인증이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절차나 한국전자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
 -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
 - 테스트를 위해 발급된 인증서를 테스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, 테스트가 완료된 경우
 - 기타 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제 14 조 (한국전자인증의 의무)

-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,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당해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
개인정보 수집 항목

- 이름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

개인정보 수집 목적

- 인증서 및 상품 환불 처리
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- 신청일로부터 5 년간 보관
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
- 가입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, 거부할 경우 인증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.

성명 _____ (서명)

[유의사항]

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”에 서명하여야 합니다.